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신청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소	명칭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종류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 용량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안전성분석보고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안전관리규정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 2부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저장·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8.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허가증 작성·발급 원자력안전위원회	→ 허가증 수령 신청인